

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. 화순군수
 - 나. 회 부 일 자 : 2004. 2. 3
 - 다. 상 정 일 자 : 2004. 2. 3
- (제12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 규 분

나. 제안사유

- 행정자치부에서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별 정액기준을 폐지하면서, 임의보조 단체와 정액보조단체 구분 없이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별 「사회 단체 보조금 상한제」를 도입하고,
- 관련 조례 제정과 「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」를 구성·운영하여 사회 단체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함에 따라,
- 「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」의 구성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단체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과 아울러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사회단체 정의 규정 :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
 - 군 관할구역내에 사무실을 두거나 활동하는 사회단체 중
 -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
 -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
-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
 - 친목 또는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
 - 개인, 기업체,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

○ 지원범위

-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
-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업
 - 군에서 위탁하거나 권장하는 사업
 - 군 단위 이상 문화·예술·체육 관련 행사
 -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

○ 매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

○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

- 위원수 : 11명 이내
- 위원장 : 부군수
- 부위원장 : 기획감사실장
- 위 원
 - 당연직 : 총무과장, 재무과장
 - 위촉직 : 군의회 의원, 민간단체 대표, 학식과 명망 있는 인사,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

○ 위원회의 기능

- 보조대상 단체 및 보조사업 선정 심의
- 보조금액 심의
-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심의

○ 보조금 목적외 사용 금지 및 보조금 반환 사유 규정

○ 보조금의 집행기준

- 단체명의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입금 원칙
- 불가피한 경우 보조금 총액의 30% 이내에서 현금 집행가능

○ 보조금의 별도 계좌 및 계정 설정

○ 보조금의 정산 및 검사 등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안으로서 기존의 정액단체 및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새로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 위원회를 구성, 심의하여 지급토록 하는 조례안임.

절차상, 법규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.

- 그러나, 안 제14조제1항중 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군수가 사회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심의의 주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므로 이 위원회에 자료제출 요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됨.

4. 결의 답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수정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

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심사보고

화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당연직 위원 : 총무과장, 재무과장
2. 위촉직 위원 : 군의회 의원, 학식과 명망 있는 인사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자료의 제출 요구 등) ①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는 사회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,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위원회의 설치) ①~③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위촉직 위원 : 군의회 의원, 민간 단체 대표, 학식과 명망 있는 인사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u>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제10조(위원회의 설치) ①~③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제정안과 같음)</p> <p>2. <u>위촉직 위원 : 군의회 의원, 학식과 명망 있는 인사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</u></p> <p>④ ~ ⑤ (제정안과 같음)</p>
<p>제14조(자료의 제출 요구 등) ①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<u>군수는</u> 사회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,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4조(자료의 제출 요구 등) ①보조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<u>위원회는</u> 사회단체의 장에게 의견제시,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② (제정안과 같음)</p>